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 서한 비공식 번역]

2015년 3월 2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

장관님 귀하,

본인은 일차산업 분야의 한국인 훈련생들의 뉴질랜드 입국과 관련한 우리의 논의를 언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뉴질랜드는 매년 최대 50명의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간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도록 일차산업 훈련 사증을 발급할 것이다.
2. 뉴질랜드는 일차산업 훈련 사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노동시장 평가, 경제수요 평가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여타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3. 직업 훈련은 모든 일차산업 분야를 아우르되, 임업 분야는 예외로 한다. 훈련생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훈련생들은:
 - 뉴질랜드에서 최소한 12주간 고등 교육기관(대학 또는 뉴질랜드 학력평가청이 1등급으로 평가한 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주선 및 감독 하에 최대 9개월 간 학업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할 수 있다.
 - 뉴질랜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교육 기관은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이후 2년 간 다른 뉴질랜드 고용 사증을 신청할 수 없다.

- 건강 및 신원 요건을 포함한 모든 그 밖의 이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차산업 훈련 사증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그러한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본인의 정중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팀 그로서
통상 장관
뉴질랜드

팀 그로서
통상 장관
뉴질랜드

장관님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일차산업 분야의 한국인 훈련생들의 뉴질랜드 입국과 관련한 우리의 논의를 언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뉴질랜드는 매년 최대 50명의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간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도록 일차산업 훈련사증을 발급할 것이다.
2. 뉴질랜드는 일차산업 훈련 사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노동시장 평가, 경제수요 평가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여타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3. 직업 훈련은 모든 일차산업 분야를 아우르되, 임업 분야는 예외로 한다. 훈련생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훈련생들은:
 - 뉴질랜드에서 최소한 12주간 고등 교육기관(대학 또는 뉴질랜드 학력평가청이 1등급으로 평가한 기관)에서 학업을 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의 주선 및 감독 하에 최대 9개월 간 학업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할 수 있다.
 - 뉴질랜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다.(교육 기관은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이후 2년 간 다른 뉴질랜드 고용 사증을 신청할 수 없다.
- 건강 및 신원 요건을 포함한 모든 그 밖의 이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차산업 훈련 사증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그러한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본인의 정중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 언급된 조치를 평가하는 더한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동 조치가 양국 우호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본인의 정중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한민국